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!

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대상지도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 정수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“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”를 비상설화 하면서 실제 심사 시에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 -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의 자격을 개선하고
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
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
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 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
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